

# 해양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정 2012. 5.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칭함)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의 종류) ① 본 대학원에서는 이학석사와 이학박사,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본인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여학위 종류를 결정하며,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 해양기계공학, 해양생명공학 등 공학의 성격이 강한 경우 공학 학위를, 해양 환경 등 이학의 성격이 강한 경우 이학 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학위수여의 요건) 학칙에 의거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하고

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2. 박사과정은 우수 국제학술지(SCI)에 한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혹은 게재승인완료)함을 최소 조건으로 한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3. 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제2조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자격시험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에 한함)
3. 학위논문 심사

제5조(박사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2회 불합격 시는 제적 조치한다.

② 박사자격시험은 매 학년도 학기말에 시행하며 핵심 교과목과 분야별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재학중 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석사 4학기까지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험 합격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논문지도교수) ① 각 과정 학생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칭함)를 선정하고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동지도교수는 대학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시기는 연구계획서 제출 때까지이며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5명 중 최소한 1명은 과외에서 선정해야 하며, 본대학교수가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에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위원)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된다.

제9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2년 이내에,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험 합격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재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제적 조치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3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6년 이내에,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 및 논문 구두시험을 실시하고 논문 실적 및 일반 지식, 전공 영역의 문제 파악 및 해결능력, 논문 작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학위논문의 통과는 전원 합의로 의결하며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 시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지도교수가 대학원위원회에 청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위수여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통합과정에 재학중인가가 박사학위 취득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졸업요건을 갖추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조항)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및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2일부로 제정, 시행한다.